

「2022년 인천광역시 연구개발(R&D) 활성화 사업」 신성장동력 연구개발 지원사업 공고

인천테크노파크는 인천시의 전략산업과 연계된 분야의 연구개발 지원을 통한 지역산업 활성화 및 연구역량 결집 도모를 위하여 「2022년 신성장동력 연구개발 지원사업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아래와 같이 연구개발 수행기관을 모집하오니, 관내 중소·중견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2022년 3월 7일

(재)인천테크노파크 원장

1 사업개요

- 세부사업명 : 2022년 신성장동력 연구개발 지원사업
- 사업목적 : 인천시 전략산업과 연계된 분야의 연구개발 지원을 통한 지역산업 활성화 및 연구역량 결집 도모
- 지원분야 : DNA(Data·Network·AI), 모빌리티, 바이오, 로봇·제조혁신, 그린기술(수소·환경)
- 지원내용 : 산학연 컨소시엄 형태로 수행하는 지역 전략산업 연계 분야의 연구개발 지원
- 지원규모 : 3개 과제, 과제당 140백만원 이내
- 접수기간 : 2022. 03. 21.(월) ~ 2022. 04. 08.(금) 18:00

2 지원자격 및 제한

- 지원자격 (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지원가능)

수행기관 구분	자격요건
주관기관	① 관내 중소·중견기업 ② 인천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 설치·운영 ③ 인천 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·운영

수행기관 구분		자격요건
참여기관	기업	인천 내외 기업부설연구소*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* 설치·운영 *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의2 기준
	대학 및 연구기관*	지역 소재의 제한 없음 *단,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
위탁기관	영리기관	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*한 기업 *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(삭제) 또는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 기준
	비영리기관	대학 및 연구기관* *단,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

1) 자격기준일 : 별도의 표기가 없는 한 공고일 기준

※ 지원과제로 선정된 경우, 수행기관의 지원자격은 협약종료일까지 유지되어야 함

- 2) 위탁연구개발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정하며, 위탁연구개발비는 수행기관별 현금 연구개발비(시비+민간부담금 중 현금)의 20% 이내로 제한, 위탁기관은 연구개발과제의 재위탁 불가
- 3) 참여기관은 주관기관이 개발할 예정 기술과 관련한 연구개발 인프라 보유 증빙자료 제출 필수
- 4)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등으로 편성된 컨소시엄 구성 필수(단독수행 불가)

□ 지원제한

- 지원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
- 공고일 기준 설립일로부터 6개월 미만이거나 인천으로 이전한 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
- 최근 3년 이내 신성장동력 연구개발 지원사업의 주관기관으로서 과제를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기업
- 2022년 인천광역시 연구개발 활성화 사업의 연구개발 지원사업(스타트업 연구개발 지원사업, 연구개발성과 사업화 지원사업, 신성장동력 연구개발 지원사업)의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서 동시에 2개 이상의 과제는 수행 불가
-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이 기개발 되었거나, 타 사업에서 기지원된

과제인 경우

- 접수기간 내 연구개발계획서 등 서류 미제출, 제출양식 미준수 또는 신청방법을 미준수한 경우
-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출서류의 내용에 거짓이 포함된 경우
-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, 참여기관, 연구책임자, 수행기관 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제재(또는 참여제한) 대상일 경우
-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, 수행기관의 대표이사, 연구책임자가 아래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
 - ①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상태이거나 부도·화의·법정관리 중
 - ② 신용거래 불량 등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
 - ③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상 완전자본잠식, 부채비율이 1,000% 이상인 경우, 또는 감사의견이 ‘의견거절’ 또는 ‘부적정’ 인 경우
 - ④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
- 기타 지원과제 선정에 따른 인천시 지원금 지급요건 미충족 기관이 수행기관에 포함될 경우(이행보증보험 발급 불가 등)

□ 기타사항

- 1) (연구상한제) 연구책임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는 최대 3개, 참여연구원은 최대 5개 제한
- 2) (연구총량제) 연구책임자의 최소 참여율은 30%, 참여연구원은 10% 이상을 계상
 - ※ 연구상한제 및 연구총량제의 경우, 접수마감일 기준 3개월 내 종료 예정인 연구개발 과제는 포함하지 않음
- 3) (연구노트) 수행기관 참여연구원은 반드시 연구노트를 작성
- 4) (연구개발비) 주관기관이 총연구개발비(현금)의 51% 이상을 사용
- 5) (성과지표) 성과지표 중 자율지표의 경우 성과목표(과학적, 기술적, 경제적, 사회적 성과) 중 2가지 이상의 영역에서

각 1개 이상의 성과지표를 설정

- 6) (연구인력 채용) 총연구개발비 1억 원당 신규 연구인력 1인 채용 필수
- ※ 신규 연구인력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연구개발과제 착수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한함
 - ※ 협약 시 신규인력채용(예정)확약서를 제출하고 채용 후 과제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하여야 함
 - ※ 참여연구원으로 등록된 신규 연구인력은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를 현금 계상이 가능. (단, 수행기관 사업주의 배우자, 직계존·비속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고용의 경우에는 인건비 계상·지급 불가)
- 7) (유사과제) 주관기관은 기존 연구개발과제 등을 검토하여 지원신청 과제와의 유사성 및 중복성을 분석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
- 8) (제재정보) 수행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제재정보 검색결과를 제출
- ※ 유사과제 및 제재정보의 경우,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NTIS)에서 발급

3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

□ 접수기간 : 2022. 03. 21.(월) ~ 2022. 04. 08.(금) 18:00

□ 신청방법 : 아래의 제출서류 일체를 인천 R&D 관리시스템(IRDS)를 통해 업로드(<http://irds.itp.or.kr/user/index.php>)

※ IRDS - 알림마당 - 인천시 R&D 지원사업 - 해당 사업공고를 통해 신청

□ 제출서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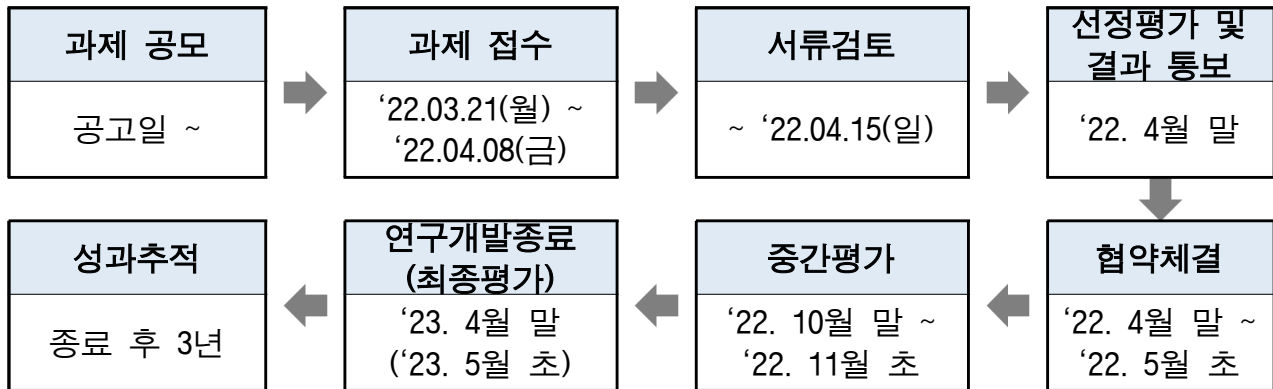
No	제출서류	부수	비고
1	연구개발계획서	1부	
2	기업정보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동의서	1부	
3	과제정보공개 동의 및 이중 수혜 금지 서약서	1부	
4	수행기관 참여확약서	1부	
5	민간부담금 출자확약서	1부	
6	신규인력 채용(예정)확약서	1부	
7	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	1부	
8	사업자등록증	1부	
9	최근 3년간 재무제표* *설립 1년 미만 기업은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제출	1부	주관+참여기관 중 기업만 제출
10	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	1부	
11	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* *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발급받은 인정서	1부	
12	유사과제 검색결과	1부	NTIS 발급
13	수행기관 및 연구책임자 제재정보 검색결과	1부	
14	가점항목 증빙자료* *접수마감일까지 확정되어 유효한 자료만 인정	1부	해당 시 제출

※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변환하여 제출하되, 주관기관장(또는 연구책임자) 날인이 필요한 제출서류는 반드시 날인완료본을 제출할 것

※ 8~14번 제출서류는 ‘증빙서류’ 라는 파일명으로 하나의 PDF파일로 제출

4 추진절차 및 상세내용

□ 추진절차



※ 상기 추진절차는 변경될 수 있음.

□ 상세내용

- 추진체계 : 산·학·연 컨소시엄 구성(주관기관 단독수행 불가)
- 민간부담금
 - 시비(인천시 지원금) : 총연구개발비의 70% 이내(최대 140백만원)
 - 민간부담금(현금+현물) : 총연구개발비의 30% 이상
 - 민간부담금(현금) : 민간부담금의 20% 이상

[참고] 연구개발비 계상 예시(주관기관이 시비 140백만원을 지원받는 경우)

구분	시비(A)	민간부담금			총연구개발비 (E=A+D)
		현금(B)	현물(C)	소계(D)	
조건	시비 ≤ (총연구개발비×70%)	민간부담금(현금) ≥ (민간부담금×20%)		민간부담금 ≥ (총연구개발비×30%)	
금액	140,000,000	12,000,000	48,000,000	60,000,000	200,000,000
비중	70%	6%	24%	30%	100%

○ 기술료 : 해당 없음

- ※ 도전적 연구개발을 장려하기 위해, 기술료를 징수하지 않음.
- ※ 단, 연구개발의 결과물을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실시권을 행사할 수 있음.

5 평가기준 및 가점항목

평가기준	평가지표	평가내용	배점
연구개발의 필요성 (20)	시장·산업의 수요	연구개발 대상 관련 시장의 규모 및 성장성	5
		산업 및 시장 내 연구개발 수요의 명확성	
		경쟁자를 고려한 시장선도 가능성	
	인천시 정책 부합성	인천시의 신성장동력 전략산업과의 부합성	5
	기술 및 제품의 우수성	기존 기술 및 제품 대비 독창성 및 차별성	10
과제목표 및 연구개발 추진계획의 우수성 (45)	정량적 지표의 적절성	기술적 성능지표 및 평가 방법의 적절성	10
		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의 적절성	
	세부 연구내용의 적절성 및 구체성	세부 연구내용 구성의 적절성	20
		세부 연구내용의 수행 가능성	
		세부 연구내용의 구체성	
	사업화 계획의 구체성	사업화 장애요인의 명확성	10
개선 대안의 적절성			
	연구개발비의 적절성	연구개발비 산정의 적절성	5
연구개발 및 사업화의 성공 가능성 (20)	수행기관의 연구개발 수행역량	수행기관의 관련 제품생산 경험 및 역량	20
		연구개발인력 및 인프라 등 R&D 역량	
기대효과 (15)	기술/경제/사회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	기술적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	15
		경제·산업적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	
		정책·사회적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	
합계			100

※ 상기 평가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며, 가점은 부여 조건에 따라 별도로 부여함.

□ 평가방법

- 1) 서류심사 : 연구개발계획서 내용, 지원자격, 지원 제한사항 등 사전심사 및 필요시 외부전문가의 서류심사를 통해 지원 규모의 5배 이내로 발표평가 대상 통보
- 2) 발표평가 : 서류심사를 통과한 과제에 한하여 기술성 및 사업성 등을 평가위원회가 종합적으로 평가

□ 가점부여 조건(총 6점 이내 부여)

- 인천시 우수기업 인증(유망중소, 비전, 중견성장사다리기업) : 3점
- 연구책임자가 여성 또는 장애인인 경우 : 3점
- 신규 연구인력 채용(과제의 참여연구원으로 포함)

신규 연구인력 채용조건	1인	2인 이상
가점	2점	3점

- 인천시 과학기술상 수상자 참여시 : 3점

참여 조건	인천시 과학기술상 수상자 참여
가점	3점(1회에 한함)

6 문의처

(재)인천테크노파크 기업지원센터 유광민 책임연구원	Tel : 032-260-0617 E-mail : gmyoo@itp.or.kr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